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 국 농 어 촌 공 사 및
농 지 관 리 기 금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‘환매이자율’ 용어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‘이자율’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매이자율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(안 제19조의6)

- 1) 환매이자율은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가 7~10년간 임대한 후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* 중 하나이지만, 일부 농가들이 ‘이자율’이라는 용어로 인해 농지를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로 혼동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하여 오해를 줄이고자 함

* 환매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(환매 이자율)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“이자율을”을 “요율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6(농지등의 환매) ① ~ ③ (생 략)	제19조의6(농지등의 환매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농지: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. 다만,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1. ----- -----. ----- 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 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<u>이자율</u> 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율</u> 을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2